

사업주와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 본 안내책자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문의는 담당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책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고용장려금」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 ✔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
- ✔ 국내복귀기업으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 신종년 적합직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
-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약계층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은

-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 ✔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
-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은

-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 무급 휴업·휴직을 한 근로자를 지원

청년·장년고용장려금은

- ✔ 청년층에게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
- ✔ 중소기업의 청년 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은

- ✔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
- ✔ 고령자 고용에 따른 환경 개선을 지원
- ✔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 ✔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 구직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

목 차

Contents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2. 고용장려금 찾기	3
II. 고용창출장려금	5
1. 사업개요	6
2. 지원 절차	7
3. 지원 유형	9
4. 지원 제외근로자	10
5. 지원제외 사업주	13
6. 감원방지 의무	15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6
III. 고용안정장려금	27
1. 사업개요	28
2. 지원 절차	29
3. 지원 유형	31
4. 지원 제외 근로자	32
5.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33
IV. 고용유지지원금	43
1. 지원 개요	44
2.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	47
3.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	52

V.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55
1. 청년내일채움공제	56
2.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58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
4.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2
5. 고령자 고용지원금	64
VI.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67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2.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3.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71
4.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
VII.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5
1. 지역고용촉진지원금	76
VIII. 참고사항	79
1. 고용장려금의 중복 지원 제한·상호조정	80
2. 부정행위 조치	82
3.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83
4. 신중년 적합직무	85
IX.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99





I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2. 고용장려금 찾기



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체계

고용창출장려금

-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 국내복귀기업 지원
- ✔ 신종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 정규직 전환 지원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 ✔ 고용유지지원금
- ✔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고용장려금

- ✔ 청년내일채움공제
- ✔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 ✔ 청년일자리노약장려금

고령자 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환경개선 장려금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2 고용장려금 찾기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계획이 있다.

① 연장근로를 단축하고자 하며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16
② 국내복귀기업에 해당된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19
③ 신중년 적합직무에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고자 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20
④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려고 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21
⑤ 정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60
⑥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 근속하기를 바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56
⑦ 정년을 정한 적이 없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	64
⑧ 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 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76

2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한다.

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39
② 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근로자의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		
③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있다.	정규직 전환 지원	33
④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35
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려는 근로자가 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37
⑥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연장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62

3

**기업 사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① 기업 사정이 어려우나 감원 없이 휴업, 휴직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7
② 기업 사정이 어려워 휴업·휴직 수당을 못주거나 50% 미만으로 줄 예정이다.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52

4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① 직장어린이집이 있으며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8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70
③ 고령자를 위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자금 융자 지원	71
④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73



II

고용창출장려금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3. 지원 유형
4. 지원 제외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6. 감원방지 의무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사업개요

- ☑ 통상적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피보험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 지원을 받기 위해
 - [공모형] 사업 참여신청서와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공모형), 신중년적합직무
 - [공모형] 사전 참여 신청 및 계획서 제출없이 신규채용 등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시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지원

2

지원 절차



① 사업참여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제출
- 구비서류
 - (공통)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
 - (해당기업만) 심사우대입증서류*, 중견기업확인서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강소기업, 일터혁신컨설팅 참여기업, 근무혁신 우수기업,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우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1호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최소 5일 이상 도입하고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등

② 대상선정 | 매월

- 연중 수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직전 달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심사하고, 승인 여부는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통지
- ※ 회차별 사업계획서 공모는 당해 연도의 예산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 유형

유형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신청 필요 (공모형)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사업 참여 신청 불필요 (요건심 사형)	국내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승승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 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4

지원 제외근로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등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 여성가장 ㉧ 건설일용직 ㉨ 장애인 ㉩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④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다만, 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지원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⑦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2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 다만, ④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⑧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⑩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사람**

-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㉔ 중증장애인 ㉕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Ⅰ 유형의 청년특례유형 및 Ⅱ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유형 해당자
 - ㉑ 기초생활수급자 ㉒ 노숙인 등 비주먹거주자 ㉓ 북한이탈주민 ㉔ 신용회복지원자
 - ㉕ 결혼이민자 ㉖ 위기청소년 ㉗ 여성가장 ㉘ 건설일용직 ㉙ 장애인 ㉚ 니트(NEET)족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공단이 위탁한 다음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㉑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㉒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④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⑤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름학교를 이수한 사람
- ⑥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사람
- ⑦ 자활근로에 2개월이상 연속하여 참여한 사람
- ⑧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②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③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 혈족·인척

④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⑤ 비상근 촉탁근로자

5

지원제외 사업주

1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공직유관단체 등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① ~ ⑤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및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의 경우와 동일
- 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
- ⑦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주가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3 고용촉진장려금

- 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②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6

감원방지 의무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제한, 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감원방지 의무 규정 적용하지 않음

7

지원유형별 지원 내용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도입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요건

- 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아래 가~다의 유형) 중 하나를 시행
 - 가. 교대제 도입·확대
 -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나.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②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함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증가 근로자수 = (제도 도입 후 매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❶) - (제도 도입 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수^❷)

- ❶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의 근로자(16P 참고)를 제외하고 산정
- ❷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 가능

참고 : 제도 도입 전후 비교기간 예시



지원내용

::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증가근로자 인건비*), 연장근로시간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의 임금감소액의 일부(임금보전비**)를 지원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원 1~2년간 지원

** 1명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1~2년간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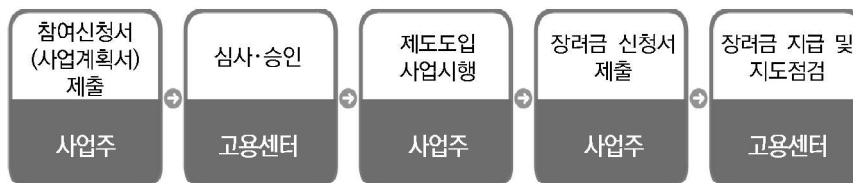
※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공모방식)은 고용보험법 기준(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으로 지원

구 분		증가근로자 인건비(1명)	임금보전(1명)
		1명 당, 1개월, 최대금액	
비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1년	40만원, 1년
	중견기업	40만원, 1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제 조 업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2년	40만원, 2년
	중견기업	40만원, 2년	40만원, 1년
	대규모기업	40만원, 1년	-

* 지원금액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 (증가근로자 인건비) 한도 없음 (임금보전) 증가근로자 지원인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한 기존 재직자 10명까지 지원

사업추진체계



2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증가근로자수 =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①) -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②)
 - ①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그 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 ②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간의 월평균 피보험자수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원	720만원
중견기업	90만원	36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한도) 100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 월할 계산하지 않음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로 고용한 경우 지원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 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 ①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
- ②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 ③ 고용보험 가입
- ④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 다만, ④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⑤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⑥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지원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만원 또는 80만원 지원

유 형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240만원	960만원
중견기업	120만원	48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원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의 30%(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단, 올해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성립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이내로 지원

지급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

※ 월할 계산하지 않음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한함)

지원요건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 필요)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p22 참고)
-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 구직등록은 고용센터(work-net)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기관에 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①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일 또는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유효한 구직등록이 있어야 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이수한 사람의 범위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1)「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 특례유형에 속하는 지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2)「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의 청년 특례유형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도작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볼.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